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예선 문제

2023. 5.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운영사무국

[문제]

-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실관계」는 [첨부 1]과 같음
- 「사실관계」에 등장하는 원고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피고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23456, 제1민사부)에 관하여, 귀하는 원고 및 피고 각각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수행하게 될 변호사로서 각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소장 및 답변서를 각 작성하여야 함
-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소장 및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답변서를 모두 작성·제출 하여야 함(소장의 경우 [첨부 2]의 양식을, 답변서의 경우 [첨부 3]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할 것. 소장은 청구취지를 새롭게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말 것)
 - 「사실관계」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개정 법률 제16930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21. 9. 15.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이하 '고시')으로 하며, 위 법령 및 고시 규정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민법상 손해배상, 위임 등에 관한 쟁점만 다룸을 원칙으로 함
 - 피고는 A사만이며 피고를 임의로 추가하지 말 것
 - 원고는 X등 1,000명이나 모든 원고들에게 동일한 사실관계가 적용됨을 전제로 할 것
 - A사의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구상관계를 비롯하여 본건에서 후속하여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하여는 소장 및 답변서에서 다루지 않아도 무방함
- O A사의 법위반 또는 책임여부 등에 관한 주장을 소장 및 답변서에 포함하되 행정규칙의 경우 제시된 고시조항을 기준으로 할 것
- 원고들이 주장하는 1인당 손해액은 제1사고 내지 제3사고를 합하여 100만원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손해액의 입증과 다과에 대한 쟁점은 주된 부분이 아니므로 소장 및 답변서에서 주되게 다루지 않도록 할 것

-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되 이와 다른 입장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논거를 제시할 것
 -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인용하여서는 아니됨
-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모두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사실관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현재로서 증명이 없다고 보되, 다만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공지의 사실 등은 원용할 수 있으며, 민사 소송법 제202조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논증을 전개할 수 있음
 - 각 당사자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로 입증해야 할 사실관계가 있다면 각 서면 내에서 '향후 입증계획' 등을 통하여 제시하여도 무방함

[유의사항]

- 제출하는 서면의 원고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김정보"로, 피고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이보호"로 각 표기하되, 서면 자체에는 참가팀의 소속 학교/법전원 등 인적사항이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문제 제목은 '팀명-원고소장', '팀명-피고답변서'로 작성(예 : 변론의신-원고소장.hwp, 변론의신-피고답변서.hwp)
- O 서면은 A4 각 15장 이내로 함
- 작성 기준 :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크기 13 포인트,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여백 : 위 20mm, 왼쪽 30mm, 오른쪽 30mm, 머리말 15mm
- 각 서면의 제출기한은 2023년 7월 7일(금) 24:00까지이고, 이메일 (lsh083585@korea.kr)로 제출할 것
-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가상의 것으로 실존하는 특정인물, 기업, 단체 등과

전혀 관계없음

- 원·피고 소송대리인 모두 특정한 일부 쟁점에 대해서만 변론이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등에서 찾아 활용 가능함

[첨부 1]

사실관계

- 1. A사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 2. 이용자는 온라인쇼핑몰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A사와 사이에 웹사이트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결제정보 등을 등록하면서 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동의)를 한다.
- 3. 위 온라인쇼핑몰에서 납품업자 B사가 공급하는 상품에 관하여는 A사가 '통신 판매업자'로서 이용자와 직접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취하는데, 그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및 구매정보가 B사에게 전달되어 B사가 물품의 출고 및 택배발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A사는 B사와 사이에 개인정보 처리 위탁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A사 온라인쇼핑몰에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B사가 수탁자로 기재되어 있다.
- 4. 한편, A사의 온라인쇼핑몰은 외부의 통신판매업자(이하 '입점판매자')에게 온라인 판매공간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입점판매자에 의하여 등록된 상품을 이용자가 보고 주문을 하면 입점판매자와 이용자 간 물품 판매계약이 체결되고, A사는 이용자가 주문 및 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로서의 기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입점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하며, 이용자는 그 주문 처리에 필요한 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문・결제정보 등이 A사로부터 해당 입점판매자에게 제공된다는 취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동의)를 한다.

- 5. A사는 납품업자 및 입점판매자가 위 온라인쇼핑몰에 관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용 주문관리 시스템' 웹페이지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납품업자 및 입점판매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물품 배송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구매자의 정보도 여기에서 조회할 수 있다.
- 6. 협력업체용 주문관리 시스템은 A사가 협력업체에게 부여하는 ID·PW를 입력하는 인증을 거쳐 접속이 가능한데, A사는 ID·PW 이외에 예컨대 OTP(One Time Password)와 같은 별도의 인증수단(예: Multi Factor Authentication, 이하 'MFA')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MFA는 아래 고시 제4조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인증기술이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21. 9. 15.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이하 '고시')

제4조(접근통제)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2022.10.) 49면 인터넷 구간 등 외부로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은 원칙적으로 차단하여야 하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업무 특성 또는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취급자가 노트북,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으로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할 때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전용하여야 한다.

- 안전한 인증 수단의 적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 하여 정당한 개인정보취급자 여부를 식별·인증하는 절차 이외에 추가적인 인증 수단의 적용을 말한다.
- 7. 납품업자 B사의 인력들은 A사와 별도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A사 온라인쇼핑몰의 이용자가 주문한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A사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는다. 입점판매자 C사도 협력업체용 주문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온라인 판매 업무에 관하여 A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 8. 어느 날 성명불상의 해커는 암시장에서 구한 ID·PW 조합을 협력업체용 주문 관리 시스템의 로그인 화면에 무차별 대입해보는 이른바 credential stuffing 공격을 통하여 납품업자 B사 및 입점판매자 C사의 접속계정을 탈취하였고 여기에서 조회되는 이용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문정보 등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하였다(이하 납품업자 B사 계정을 통해 유출된 사고를 '제1사고', 입점 판매자 C사 계정을 통해 유출된 사고를 '제2사고'라 한다).

- 9. 참고로 credential stuffing 공격은 피해 계정의 주인이 사이트별로 똑같은 ID·PW 조합을 이용한 것이 1차적 원인이기는 하지만, 보안업계에서는 MFA를 설정하는 경우 ID·PW 탈취로 인한 계정도용 사고를 통상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사는 국내 온라인쇼핑몰 중 상위권의 사업자인데, A사와 규모가 비슷한 경쟁업체들 중에는 MFA를 비롯한 ID·PW 외 인증수단을 설정하는 기능을 외부 협력업체가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곳도 있는 반면 그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 10. 한편, A사의 고객만족팀 직원은 주요 민원처리 내역에 관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환불을 받은 고객들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환불금액 등 개인정보를 클라우드 사업자인 D사가 제공하는 Software as a Service(이하 'SaaS') 방식 온라인 스프레드시트에 올려두고 있었다.
- 11. D사는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하 'ISMS-P 인증')을 취득하여 두었으며, 사업규모는 A사보다 훨씬 더 크다.
- 12. 그런데 D사 데이터베이스 인프라팀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위 온라인 스프레드시트 서비스에 등록된 이용기업들의 데이터를 밀 반출하여 범죄조직에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다크웹에서 유통되던 데이터 중에서 위 A사 고객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발견되었다(이하 '제3사고'라 한다).
-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3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A사는 D사의 ISMS-P 인증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D사의 온라인 스프레드시트 이용약관을 그대로 수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 이외에는 D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관리·감독을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 D사의 온라인 스프레드시트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에는 이용기업이 이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이용기업이 개인정보처리 위탁자로서 D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관조항도 없었다.
- 14. 제1 내지 3사고 모두에서 본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X 등 1,000명(이하 '원고들')은 A사를 상대로 각 사고로 인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변호사 김정보"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A사는 응소를 위하여 "변호사 이보호"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 15. 원고들은 제1, 2사고와 관련하여 A사가 운영하는 협력업체용 주문관리 시스템에서 협력업체의 ID·PW 이외에 MFA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 제 3사고와 관련하여 A사가 개인정보 처리를 D에게 위탁하고도 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부분이 각각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
- 16. 한편 A사의 관점에서는 제1, 2사고와 관련하여 납품업자 및 입점판매자는 자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시 제4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고, 제3사고와 관련하여 대고객 서비스가 아닌 내부적인 보고서 작성을 위해 D사의 온라인 스프레드시트 서비스를 쓰는 것이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고려도 미처 하지 못했으며, 설령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보다 훨씬 규모가 큰 D사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하여 ISMS-P 인증까지 취득한 이상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많은 이용기업들이 일일이 D사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여기고 있다.
- 17. 귀하는 위와 같은 양 당사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장 및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답변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첨부 2]

소 장

원고 X 등 10,000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보

피고 주식회사 A 서울 서초구 OOO 대표이사 김대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023.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답 변 서

사 건 2023가합123456 손해배상(기)

원 고 X 등 1,000명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다 음 -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2023. . .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귀중